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768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463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24.
판 결 선 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 16.자 취득세 373,660,89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43,960,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2. 12.자 취득세 66,449,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2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 제2호는 5년 이내 매각 또는 타용도 사용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에서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는 '용도 미사용'의 경우 추징을 배제하는 것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에 해당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적인 조례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이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또한 과세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인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과 이에 대한 추징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인사동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2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는데 있고, 제3항에서 추징 규정을 둔 취지는 제1항의 감면규정의 악용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으나 인사동 문화지구가 지역의 고유문화가 아닌 무분별한 상업적인 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권장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 그 시설을 용도에 맞게 이용할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 더 크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 · 증여에 대하여는 제1호에 비하여 감면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5년 이내 매각 또는 타용도 사용의 경우에 제1호와 달리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추징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상열

판사 정봉기

판사 조용래